

대구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나312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나312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소112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보조참가인 B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변론종결 2022. 11. 30.

판결선고 2023. 3.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소112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오빠이면서 보조참가인 B(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외삼촌(피고는 이모)이다.

나. 망인은 2018. 7. 25. 원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D,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8.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보조참가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0.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은 2018. 8. 2. 및 같은 달 3.경 원고에게 1년 치 임대료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이 2019. 6. 1. 사망하자, 피고는 같은 달 3. 원고에게 망인의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딸 G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2020. 5. 14.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는 위 돈으로 망인의 장례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망인의 장례비용에 쓸 것이 아님에도 마치 장례비용에 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되기를 원하였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살도록 하였으며, 이에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년 치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다. 망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보조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간 임대차보증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망인은 생전에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또는 유족)을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다음에도 같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망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망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례를 담당하는 피고를 비롯한 유족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8. 8. 1.경 퇴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생들인 피고 또는 H(보조참가인의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간병을 받기 위하여 2018. 7.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급하고, IPTV 이용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정황으로 볼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망인이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까지 귀속시키려 하였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2018. 7. 30.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망인이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망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9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인 2019. 6. 3.경부터 장의행사비 500만 원을 지출하고, 같은 해 7. 12. I사의 49재 비용으로 250만 원, 위패비용 150만 원, 해상장 비용 170만 원, J병원 장례식장 비용 492만 원 합계 1,562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돈을 망인의 장례와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5) 피고는 망인 및 형제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망인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사용에도 그러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망인의 장례비용 등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이경한, 판사 안정현